

1. 개정이유

2019년 12월 3일 공포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임된 사회보장정보 교육 내용 및 방법과,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2조의3 신설)

나.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7조의3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) ① 법제31조의2에 따른 사회
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.

1. 개인정보 보호 개념 및 원칙
2.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·제도·지침
3.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
4.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
5. 개인정보 오·남용 방지 방안
6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

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
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운영하며,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가
이러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제7조의3(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
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

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
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하려면 사전에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 신청서
2. 사업 제안서
3.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
4. 센터 총괄담당자(센터장) 인적사항
5. 사업수행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·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통합사례관리 사업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3(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실시) ① 법제31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.</u> <u>1. 개인정보 보호 개념 및 원칙</u> <u>2.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·제도</u> <u>· 지침</u> <u>3.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 사항</u> <u>4.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</u> <u>5. 개인정보 오·남용 방지 방안</u> <u>6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운영하며,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러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3(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위탁)</u> <u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</u>

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하려면 사전에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 신청서
2. 사업 제안서
3.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 등본, 법인인감증명서

4. 센터 총괄담당자(센터장) 인적 사항

5. 사업수행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경우 그 명칭 ·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통합사례관리 사업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